

# 제58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58조의 요약

-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이나 변상책임있는 타인소유자산 등 자산총액의 20% 이상 자산가액이 상실되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미납부 또는 납부할 법인세 × 재해상실비율  
 =(산출세액 + 가산세 - 다른 법률감면세액)  

$$\times \frac{\text{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text{상실전 자산총액(토지제외)}} \leq \text{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이나 재해발생일부 1개월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관할세무서는 공제세액결정하여 통보하고, 공제확인될 때까지 법인세 징수유예함.



### ●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I.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1. 본 조의 개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이나 상실되면 자기자산과 변상책임있는 타인소유자산의 합계액의 20% 이상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 및 납부할 법인세와 가산금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상실된 자산의 상실전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가액 한도)을 재해손실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은 재해가 발생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일 현재 기준으로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내에 제출하며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세의 적법신고기한내에 제출한다. 그러나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다.

### 2.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이유와 재해의 범위

법인은 정상적 운영과정에서도 자연재해나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첨단시설로서 금액이 크고 따라서 재해로 인한 손실금액은 엄청나다. 이에 대해 많은 법인은 대부분 보험으로 이를 대비하고 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입는 타격은 크다. 천재·지변·기타의 재해는 자연재해와 산업재해 등을 모두 포괄하는데 자연재해에는 화재·수재·지진·화산·폭발·냉해 등 자연현상의 재해를 모두 말한다. 산업재해는 방화·화재·실화·붕괴·교통사고·인위적 폭발 등 인재도 포함되는데, 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입는 타격이 크므로 이와 관련된 납세부담액을 경감하고 납세의무불이행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II. 재해손실세액의 공제 및 계산 (법 제58조제1항)

### ① 미납부세액×재해상실비율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발생시 세액납부액 일부를 경감해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 공제해줌이 원칙이다. 미납부된 세액의 경우는 「당해 미납부된 세액×재해상실비율」로 계산되며, 기타의 경우는 「(산출세액+가산세액-다른 법률상의 공제감면세액)×재해상실비율」로 세액공제액이 계산된다.

여기서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이 재해전 자산총액(자기자산⊕타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는데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재해전 자산총액(자기자산⊕타인자산)에서 재해가 있어도 결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장부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모든 가액을 계산하여 재해상실비율을 산출한다.

### 1.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요건 (법 제58조제4항)

#### 1) 사업용 증자산가액의 20% 상실

##### ① 20%의 재해상실비율

본 항은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는 가정에서 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곤란 판단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관적 입장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이 상실되면 무조건 납세가 곤란하다고 보고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 ② 20% 미만인 경우 부적합

결론적으로 법인이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면 모든 법

인은 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내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해가 아닌 사유로 2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재해상실비율(상실된 자산가액이 상실전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으로 계산된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 2)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 ① 법인장부가액으로 비율계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여부는 납세곤란 등의 주관적 주장과 판단보다는 결국 재해상실비율이라는 객관적 수치로 판정한다.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이 상실전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재해상실비율계산을 위한 상실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가액은 모두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결정일 현재가액에 의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데, 토지는 제외하고 사업용 자산과 타인소유자산이라도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 있는 자산도 합하여 계산한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 ② 장부초실·분실시 시가로 계산

다음 시행령은 재해로 인해 법인장부도 소실·분실되어 자산장부가액을 알 수 없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 현재의 가액에 의거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③ 2회 이상의 재해시 재해상실비율의 연결합산계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취지가 재해로 인하여 조세부담능력이 저하된 납세 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동일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법인인 경우라면 재해상실비율은 최초 재해전 자산총액에 최종 재해 전까지 증가된 자산가액을 합하여 재해상실 비율을 산출하도록 다음의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text{재해상실비율} = \frac{\text{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text{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text{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3) 자산총액과 재해자산의 범위

### ① 자산총액의 범위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재해손실로 인한 공제세액의 계산산식 중 분모인 ‘자산총액’이란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차변합계액인 총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유동자산·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도 포함되나 재해와 관련 없이 존속하는 토지만을 제외한다. 여기서 토지를 제외한 이유는 토지는 어떤 재해가 있더라도 손실이나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액을 총 자산가액으로 한다고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즉,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따라서 재해손실도 국내자산의 재해손실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뜻이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②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개념**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산식상 분자인 재해상실자산은 상기의 자산총액 중 재해로 인해 재산가치나 권리 등의 능력이 더이상 회복불가능한 상실자산을 말한다. 다음 시행규칙은 수탁자산 중 손실보상해주는 것은 포함하나 증서가 없어도 향후 권리확보가 가능한 예금·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되었다도 상실자산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상기 시행규칙 제2항의 규정은 수탁받은 채권 등의 자산만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소유한 일반 채권자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채권의 추심증서가 멸실되어도 자산가액의 상실은 아니다.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금액을 상실재산가액에서 빼서 계산하지는 않는다.

③ 보험금의 차감 배제

또한 상기 시행규칙 제2항후단의 규정은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보험금을 차감하여 재해자산가액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금액의 계산 (법 제58조)**

**1) 재해손실세액공제 산식**

① 재해손실세액공제 규정

당해 법인의 법인세 등 확정세액의 재해일 현재 미납부 부분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의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공제한 세액을 산출하는데 다음의 시행규칙은 공제대상 법인세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2007. 3. 30 개정)

$$\left( \begin{array}{l} \text{법 제55조의} \\ \text{규정에 의한} \\ \text{산출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 \\ \text{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 \\ \text{의5의 규정에 의한} \\ \text{가산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다른 법률에} \\ \text{의한 공제} \\ \text{및 감면세액}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재해로 인하여 상} \\ \text{실된 자산의 가액}}{\text{상실전 자산총액}}$$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산식

상기 시행규칙에 의거 공제대상금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된다.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

**[재해손실세액공제액]**

$$\begin{aligned} &= \{ \text{사업연도법인세산출세액} + \text{미부과법인세액} + \text{(가산세액)} \\ &- \text{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 &\text{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 \times \text{재해상실비율} \left( = \frac{\text{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text{상실전 자산총액}} \right) \end{aligned}$$

◎ 재해발생일 현재 이미 부과 및 확정된 법인세이지만 아직 미납부된 법인세액

**[재해손실세액공제액]**

=미납부된 총세액(가산세액 및 가산금 포함)

$$\times \text{재해상실비율} \left( = \frac{\text{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text{상실전 자산총액}} \right) \leq \text{재해 상실된 자산가액}$$

**2) 재해로 인한 공제대상법인세의 범위**

① 공제대상법인세 등의 유형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과납부상태는 첫째, 재해발생일 현재 이미 부과되었으나 미납부된 세액 둘째, 재해발생일 현재 아직 부과되지 아니한 세액 셋째,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법인세로서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란 재해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와 부과는 되었으나 아직 미납부된 세액이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미부과세액 · 미납부세액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란 재해발생일 현재로 볼 때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무신고하였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될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현재에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세를 의미한다.

이밖에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이지만 미납부된 세액이란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고지된 법인세 중 미납부된세액과 법인의 자진신고절차에 따른 법인세 신고금액이지만 이중 아직 미납부된 세액을 말한다.

③ 가산금 및 가산세

재해로 인해 법인의 조세납부부담액을 경감시키는 것이므로 전반적 조세를 포괄한다. 다음의 시행령은 법인세법 ·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에는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 3. 재해손실과 세액징수유예

### ① 재해손실시 세액공제 확인시까지의 징수유예

법 제58조제1항에서 열거한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법인세는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국세징수법상의 6개월간 징수유예

반면에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은 재해로 인하여 심한 손실을 받은 때는 법인세 등 국세의 징수유예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는 재해손실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의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조는 국세징수법의 규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 제1항에서 열거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되는 날과 국세징수법상의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1. 4. 4 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 III.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 및 통지

#### 1.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 (법 제58조)

##### 1) 신청서제출기한

###### ① 재해발생일부터 1월 및 신고기한

재해손실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미납부된 법인세는 1월내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미경과법인세는 신고기한내에 신고기한이 1월 미만이면 1월 내에 정부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1.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로 한다.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 2)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의 기재·제출방법

###### ① 기재내용의 오류시도 공제인정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상기의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신청서상 기재소득금액과 결정·경정소득금액이 달라져 동일하지 않아도 실질은 같은 것이므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재해손실이 발생한 때 사업연도 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다.

②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의 미제출시의 공제인정**

거주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서를 내도록 함이 원칙이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절차의 형평차원에서 법인이 신청서를 실수나 경황이 없어 미제출하여도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따라서 법인이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결정통지 (법 제58조제3항)**

관할세무서장은 재해법인으로부터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을 받으면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일 현재 아직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여기서 정부의 통지기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정부의 재해사실판단과 공식기관의 검증 등에 의거 가능하면 빠른 개념으로 본다.